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설·담당관의 설치) 처장을 직접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공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 및 정책연구실을 둔다.

별표 1의 일반직 중 5급란·6급란·7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, 일반직 소계란 중 “103”을 “129”로 하며, 총계란 중 “206”을 “232”로 한다.

직급	정원	정원내용
5	26	지방행정사무관 22(계약직 가급 1),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 3, 지방기계사무관·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1
6	54	지방행정주사 31, 지방행정주사 또는 계약직 나급 17, 지방통신주사 1, 지방전산주사 3, 지방토목주사 1, 지방전기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 1
7	28	지방행정주사보 22, 지방건축주사보 1, 지방기계주사보 또는 지방전기주사보 1, 지방전산주사보 3, 지방사서주사보 1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의 2(비밀업무)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당직근무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참작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근무시간)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

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6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중 “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”로 한다.

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중 연가일수란의 “4”를 “3”으로, “7”을 “6”으로, “10”을 “9”로, “13”을 “12”로, “16”을 “14”로, “19”를 “17”로, “22”를 “20”으로, “23”을 “21”로 한다.

별표 1의 출산의 일수란 중 “1”을 “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,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